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 연구

-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

남재량*

본고는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어떤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차이 발생 요인을 고용형태 정의상의 차이, 분석방법의 차이, 그리고 자료의 차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비정규 근로 정의에 입각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인적 특성과 인적자본의 양 및 사업체 특성에 더하여 근로자들의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거나 사라졌다. 아울러 교육정도과 노조유무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1. 서론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가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주제로 부상한 이래 아직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남아있다. 비정규 근로의 규모에 대한 초창기의 소모적인 논쟁에 이어 최근 들어 고용형태 간의 임금격차를 엄밀히 측정하고 이들 가운데 차별적인 처우에 의한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아 분명히 하고 이들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한다면 비정규 근로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한다기보다 오히려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에 대한 혼란을 불러오고는 것 같다.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임금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겠으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들을 찾고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무게중심을 잡는 데에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에 따라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정규 근로자 가운데에도 특히 근로조건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매우 우수한 근로자들을 정규 근로로 정의하고 나머지 임금 근로자들을 비정규 근로로 정의한다. 이 경우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는 클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확립된 고용형태 구분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들 스스로 판단에 따른 구분, 즉 자기선언적 고용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선언적 고용형태는 확립된 고용형태 구분 기준과 어떤 체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된 바 없다.

나아가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결과들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연구방법의 차이에도 크게 의존한다. 임금격차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패널자료가 갖는 최대 장점 가운데 하나는 동일한 개체를 상이한 시점에서 식별할 수 있고 각 개체들의 미관찰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제한 연구들은 그렇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임금격차가 매우 작다.

본 연구는 이미 확립된 고용형태 구분 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을 기본으로 하는 한편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들도 사용하여 함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가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기준들에 입각하여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 비교에 있어 일관성을 높이기로 한다. 아울러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다양한 고용형태 구분 기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기존의 연구와 고용형태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은 기초통계들을 제시한다. 제4장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동태성이 임금격차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제5장은 구체적으로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패널자료 분석 모형에 입각하여 미관찰 이질성을 통제한 경우 뿐만 아니라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경우의 결과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도 알 수 있게 한다. 마지막 제6장은 이상을 요약하고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기존연구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종사자는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며 차별적인 처우를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안주엽 2001, 안주엽 2004) 그러나 남재량(2006, 2007a, 2007b)은 인적특성과 사업체 특성 및 인적자본 등을 통제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매우 작으며, 미관찰 이질성까지 추가로 통제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임금격차가 역전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학술연구는 아니지만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구로 남재량·이인재·이기재(2005), 어수봉·윤석천·김주일(2005)를 들 수 있다.

또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와 분석방법을 달리한 이인재(2006)의 연구에서도 정규직 종사자의 임금 프리미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기성·김용민(2006)은 정규·비정규 근로자 간 임

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권혜자(2007)는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는 임금 페널티를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초래된다. 첫째, 연구자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다. 둘째,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다. 셋째,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자. 현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사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고용형태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확립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확립된 기준과 종사상의 지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사상의 지위로 고용의 형태를 구분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여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부가조사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 가운데 임금격차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안주엽, 2004)는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를 [그림 1]의 R과 N으로 정의하지 않고 정규직을 C(정규상용직), 비정규직을 D+E+F로 정의하고 있다. 정규상용직만 정규직으로 파악할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임시직과 일용직이 제외되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클 수 밖에 없다. 반면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를 각각 R과 N으로 정의한 연구들(남재량 외 2005, 어수봉 외 2005, 남재량 2006, 남재량 2007a, 남재량 2007b)에서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는 매우 적다.

[그림 1]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의 분류

		종사상의 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 형태	정규직 (R)	정규상용직 (A)	정규임시일용직 (B)	
	비정규직 (N)	비정규상용직 (C)	비정규임시일용직 (D)	

나머지 한 가지 정의는 응답자 스스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자기선언적 비정규직이다. KLIPS는 이를 조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기존의 고용형태에 대한 확립된 기준에 따른 정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에 대해 분석된 바 없다. 다만 최근 연구(남재량 2007b)에 따르면 양자는 매우 상이한 집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의를 사용한 연구들도 임금격차가 크다는 연구(안주엽 2001, 권혜자 2007)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이인재, 2006)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분석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은 분석방법이다. 정규직을 R, 비정규직을 N으로 정의하고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격차를 분석할 경우 눈에 관찰되는 요인만 통제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남재량 외 2005, 어수봉 외 2005) 한 걸음 더 나아가 경활 부가조사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고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정규근로의 시간당임금이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

도 있다.(남재량 2006, 남재량 2007a) 그는 이를 보상임금격차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KLIPS와 자기선언적 비정규직 정의를 사용한 연구에서 임금격차 추정치에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이러한 분석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라 추정된 임금격차가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마지막 요인은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이다. 임금격차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가구조사 자료와 사업체 조사 자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자료는 경찰 부가조사 및 KLIPS이다. 후자에 속하는 자료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이다. 가구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은 다시 임금격차가 크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로 나뉘어지나, 사업체 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임금격차는 크게 나타난다.(박기성·김용민 2006, 이인재 2007) 그러나 사업체근로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달리 아직까지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확립된 고용형태 구분 기준에 입각하여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경찰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유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음은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확립된 고용형태 기준 뿐 아니라 여러 다른 비정규 근로 정의들도 함께 사용하여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에 있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KLIPS도 경찰 부가조사에서 사용되는 고용형태 기준과 거의 유사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확립된 기준에 따른 고용형태 분류가 가능하다.

III. 기초통계

엄밀한 분석에 앞서 근로형태에 따른 월평균 임금의 차이를 살펴보자.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 근로의 임금은 2002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규 근로에 비해 낮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자 간의 임금격차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양자의 평균임금은 각각 111.2만 원과 141.6만 원으로서 30.4만 원의 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2006년에 이르면 양자의 임금은 139.3만 원과 195.3만 원으로 임금격차가 56.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규 근로 대비 비정규 근로의 상대임금은 2002년 0.79에서 2006년 0.71로 감소하였다.

<표 1>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고용 형태	임금수준	정규	141.6	158.3	172.6	184.9	195.3
		비정규	111.2	113.8	123.6	121.0	139.3
	상대임금 (정규=100)		78.5	71.9	71.6	65.4	71.3
	관측수	정규	2,671	2,938	2,998	3,007	3,099
		비정규	1,269	1,235	1,227	1,061	1,184
		계	3,940	4,173	4,225	4,068	4,283

그러나 월평균 임금은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여 보자. <표 2>는 이를 보여준다. 2002년 정규 근로의 임금에 대한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8이다. 이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임금인 월평균 상대임금 78.5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2002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연도에서도 유사하게 상대임금 격차가 줄어든다. 단지 근로시간만 통제하더라도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임금격차는 모든 연도에서 10% 포인트 이상 크게 감소한다.

<표 2>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

(단위: 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고용 형태	임금	정규	7,124.8	7,930.3	8,364.5	8,959.5	9,617.2
		비정규	6,471.2	6,876.7	7,101.5	6,877.3	7,985.9
	상대임금 (정규=100)		90.8	86.7	84.9	76.8	83.0
	관측수	정규	2,668	2,935	2,993	3,004	3,096
		비정규	1,265	1,228	1,221	1,056	1,179
		계	3,933	4,163	4,214	4,060	4,275

이제 다른 기준들을 사용하여 정규와 비정규 근로를 구분할 경우 임금격차에 대해 살펴보자. <표 3>과 <표 4>는 이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각각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고 있다. 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정규와 비정규 근로를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자기선언적 기준이며 또 하나는 종사상의 지위인데 종사상 지위는 다시 통계청 기준과 KLIPS 기준으로 구분된다¹⁾. 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정규와 비정규 근로를 구분할 경우 임금격차는 확립된 고용형태 기준에 입각한 경우에 비해 월평균 임금에서든 시간당 임금에서든 더욱 크다.

자기선언 기준을 사용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정규 근로에 대한 상대임금은 2002년의 58.9에서 2003년의 54.8로 하락한 후 2006년의 54.3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5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1) KLIPS는 고용계약기간만 사용하여 종사상의 지위를 구분한다. 반면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 외에도 퇴직금 적용여부 및 인사관리 규정 적용여부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한다.

<표 1>에서 본 바와 같은 70 수준의 상대임금에 비해 매우 큰 격차이다.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 구분 기준을 사용하여 임시·일용직을 비정규 근로로 분류할 경우 임금격차는 자기선언의 경우에 비해 약간 작아진다. 즉 상대임금이 2002년의 64.9에서 2006년의 57.5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자기선언의 경우에 비해 크다. KLIPS의 종사상 지위를 사용할 경우 임금격차는 자기선언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비정규 근로의 정규 근로에 대한 상대임금은 2002년에도 59.3으로서 자기선언의 경우에 비해 다소 높으나 2006년이면 51.9로 자기선언의 54.3보다 낮다. 이로 인해 KLIPS의 종사상 지위 구분 기준을 사용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상대임금이 낮아져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표 3> 기초통계 :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기 선언	임금수준	정규	144.6	162.3	180.6	196.2	208.1
		비정규	85.2	88.9	98.7	101.8	112.9
	상대임금 (정규=100)		58.9	54.8	54.6	51.9	54.3
	관측수	정규	3,077	3,049	3,074	2,847	2,960
		비정규	862	909	1,151	1,221	1,311
계		3,939	3,958	4,225	4,068	4,271	
종사상 지위 : 통계청	임금수준	정규	157.4	176.1	196.6	208.2	217.5
		비정규	102.1	108.0	113.6	112.8	125.2
	상대임금 (정규=100)		64.9	61.3	57.8	54.2	57.5
	관측수	정규	2,116	2,281	2,300	2,359	2,526
		비정규	1,824	1,892	1,925	1,709	1,757
계		3,940	4,173	4,225	4,068	4,283	
종사상 지위 : KLIPS	임금수준	정규	144.6	159.8	176.1	187.6	200.7
		비정규	85.7	89.2	95.7	99.3	104.2
	상대임금 (정규=100)		59.3	55.8	54.3	52.9	51.9
	관측수	정규	3,074	3,295	3,292	3,159	3,336
		비정규	866	878	933	909	947
계		3,940	4,173	4,225	4,068	4,283	

이제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도 <표 2>의 확립된 고용형태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 비해 다른 기준들을 사용할 경우 임금격차가 더욱 크다. 표에서 보듯이 자기선언에 따를 경우 비정규 근로의 상대임금은 2002년에 70.6으로 <표 2>의 90.8에 비해 무려 20 포인트 가량이나 낮다. 다른 연도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정도의 격차가 유지된다.

종사상의 지위를 사용하여 시간당 임금 격차를 살펴보더라도,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선언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다. 즉 통계청 기준을 사용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상대임금은 2002년 68.9, 2006년 63.2이며 KLIPS 기준을 사용할 경우 상대임금은 각각 69.1과 64.0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추세가 월평균 임금에서 보다 분명하게 관찰된다. 즉 근로시간을 통제함에 따라 임금격차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시간에 걸쳐 시간당 임금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패널자료는 대표성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나, 시간당 임금 격차의 확대 추세가 과연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다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고용형태가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표 4〉 기초통계 : 시간당 임금

(단위: 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기 선언	임금	정규	7,387.2	8,317.0	8,793.7	9,469.8	10,291.3
		비정규	5,212.2	5,533.2	5,861.8	5,916.8	6,497.6
	상대임금 (정규=100)		70.6	66.5	66.7	62.5	63.1
	관측수	정규	3,072	3,042	3,069	2,843	2,958
		비정규	860	908	1,145	1,217	1,305
		계	3,932	3,950	4,214	4,060	4,263
종사상 지위 : 통계청	임금	정규	8,082.9	8,946.5	9,592.3	10,076.9	10,790.3
		비정규	5,565.6	6,036.1	6,126.2	6,116.3	6,814.6
	상대임금 (정규=100)		68.9	67.5	63.9	60.7	63.2
	관측수	정규	2,114	2,277	2,298	2,355	2,523
		비정규	1,819	1,886	1,916	1,705	1,752
		계	3,933	4,163	4,214	4,060	4,275
종사상 지위 : KLIPS	임금	정규	7,414.5	8,128.7	8,588.6	9,126.1	9,942.1
		비정규	5,127.0	5,688.3	5,902.6	5,884.3	6,362.4
	상대임금 (정규=100)		69.1	70.0	68.7	64.5	64.0
	관측수	정규	3,069	3,287	3,287	3,155	3,332
		비정규	864	876	927	905	943
		계	3,933	4,163	4,214	4,060	4,275

IV. 고용형태의 변화와 임금의 변화

임금격차의 원인을 밝히기에 앞서 근로형태의 변화에 따라 임금이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지 살펴보자. 근로형태의 변화가 근로조건을 동반할 가능성은 크지만 그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비정규 근로에서 정규 근로로 이행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얼마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규 근로에서 비정규 근로로 이행

하는 경우 과연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하기 어렵다.

아래의 <표 5>는 이에 답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표는 2002년과 2003년의 1년 사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행에 따른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를 2006년까지 보여준다. 임금 변화액과 변화율은 모두 200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에서 '1'은 정규 근로, '2'는 비정규 근로를 나타내며 예컨대 '21'은 비정규 근로에서 정규 근로로 이행을 의미한다. 표에서 보듯이 2002년 비정규 근로에서 2003년 정규 근로로 이행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6.5만원에서 151.4만원으로 14.9만 원 상승하여 10.9%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이듬해인 2004년의 임금은 2002년에 비해 34.5만원 상승하며 34.5%의 상승률을 경험하며 2006년에는 40.5% 상승률을 기록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2002년 정규 근로에서 2003년 비정규 근로로 이행한 근로자와 유사하다. 얼핏 생각하는 바와 달리 정규에서 비정규 근로로 이행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표 5>에서 보듯이 이들의 2002년 임금은 오히려 '21' 근로자보다 약간 낮은 132.9만 원이었다. 비정규 근로로 전환하였더라도 이들의 임금은 147.1만 원으로 14.3만 원 상승하였으며 이는 10.7%의 임금상승률에 해당한다. 임금변화액과 임금변화율에 유사한 변화를 거쳐 2006년이면 이들 두 집단의 임금은 각각 191.8만 원과 192.9만 원으로 사실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이들 두 부류의 근로자들은 서로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임금에 있어 굉장한 유사성을 보인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는 '21' 근로자가 '12' 근로자 보다 2002년에 더 높다. 그러나 '12'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이후 '21' 근로자 보다 급속히 상승하여 2006년이면 9,654원과 9,487원으로 매우 비슷해진다.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옮겨 다니는 근로자들로 인해 임금에 있어 일종의 재정(arbitrage)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그러나 비정규 근로에 계속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승폭과 상승률이 낮아 2006년에 이르면 다른 집단들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

<표 5>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

(단위: 만원, 원)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임금 수준	21	136.5	151.4	170.9	182.2	191.8	7,186	7,845	8,607	8,939	9,654
	22	103.3	113.8	130.0	136.7	145.5	6,533	7,460	7,281	7,404	7,916
	12	132.9	147.1	169.3	176.3	192.9	6,425	7,374	8,238	8,796	9,487
	11	149.5	169.6	192.7	211.8	229.2	7,677	8,559	9,342	10,264	11,549
임금 변화액	21	0.0	14.9	34.5	45.7	55.3	0.0	659	1,422	1,753	2,469
	22	0.0	10.6	26.7	33.4	42.3	0.0	927	748	872	1,383
	12	0.0	14.3	36.4	43.4	60.1	0.0	948	1,812	2,370	3,061
	11	0.0	20.1	43.2	62.4	79.7	0.0	882	1,665	2,587	3,872
임금 변화율	21	0.0	10.9	25.3	33.5	40.5	0.0	9.2	19.8	24.4	34.4
	22	0.0	10.2	25.9	32.4	40.9	0.0	14.2	11.5	13.3	21.2
	12	0.0	10.7	27.4	32.7	45.2	0.0	14.8	28.2	36.9	47.6
	11	0.0	13.5	28.9	41.7	53.3	0.0	11.5	21.7	33.7	50.4

단, 임금변화액 및 임금변화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표 6>은 여타 비정규 근로 정의에 입각할 경우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면 자기선언의 경우 '21' 근로자의 2002년 월평균 임금은 78.9만원이었으며 이는 '12' 근로자의 85.8만원에 비해 낮았으나, 정규 근로로 전환함에 따라 2003년 임금이 106.6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여 '12' 근로자의 91.1만원을 능가한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6년이면 148.8만원과 111.9만원으로 37만원에 육박하는 차이가 생긴다. 이와 달리 시간당 임금은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2005년에 미소하게 증가하며 2006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자기선언의 경우와 달리 종사상 지위로 구분할 경우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통계청 기준을 사용할 경우 '21'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2년에 126.1만원이었다. 반면 '12' 근로자의 2002년 임금은 이보다 높은 131.6만원이었는데 2003년에 두 집단의 임금은 역전되어 '21' 근로자의 임금이 다소 많다. 그러나 이후에는 양자의 임금에 별 차이가 없으며 2006년에도 192.6만원과 182.1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KLIPS 기준을 사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고 상용직을 정규직,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유사하다. 즉 KLIPS 기준을 사용할 경우 '21' 근로자의 2002년 임금은 79.9만원으로 '12' 근로자의 88.4만원 보다 적으나 이듬 해에 103.6만원과 88.0만원으로 역전된다. 그러나 이후 양자의 임금수준은 매우 유사하며 2006년에도 147.0만원과 135.9만원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간당 임금에서도 임금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

<표 6>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 : 자기선언 및 종사상 지위

(단위: 만원, 원)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자기 선언	임금 수준	21	78.9	106.6	123.6	130.0	148.8	4,786.7	5,120.2	5,544.3	6,022.6	7,886.6
		22	91.8	96.9	106.3	114.6	121.4	5,449.9	5,924.0	6,381.7	6,410.9	6,640.7
		12	85.8	91.1	106.1	113.6	111.9	3,875.2	4,492.7	5,564.0	5,860.4	5,875.1
		11	151.4	171.1	194.4	212.4	229.2	7,866.0	8,836.1	9,434.0	10,319.4	11,509.7
	임금 변화액	21	0.0	27.7	44.7	51.1	69.9	0.0	333.6	757.7	1,236.0	3,100.0
		22	0.0	5.1	14.5	22.8	29.6	0.0	474.2	931.8	961.1	1,190.8
		12	0.0	5.3	20.3	27.8	26.1	0.0	617.5	1,688.9	1,985.3	1,999.9
		11	0.0	19.7	43.0	61.1	77.9	0.0	970.1	1,568.0	2,453.4	3,643.7
	임금 변화율	21	0.0	35.1	56.6	64.7	88.6	0.0	7.0	15.8	25.8	64.8
		22	0.0	5.6	15.8	24.9	32.3	0.0	8.7	17.1	17.6	21.9
		12	0.0	6.2	23.6	32.4	30.4	0.0	15.9	43.6	51.2	51.6
		11	0.0	13.0	28.4	40.3	51.4	0.0	12.3	19.9	31.2	46.3
종사상 지위 : 통계청	임금 수준	21	126.1	149.4	161.1	176.4	192.6	6,406.1	7,269.0	7,410.1	8,458.1	9,899.9
		22	100.8	109.1	116.9	121.6	128.7	5,533.3	6,286.0	6,286.9	6,366.2	6,781.9
		12	131.6	144.9	162.9	172.3	182.1	7,073.0	7,105.0	7,356.6	8,109.9	8,804.0
		11	166.0	188.7	217.7	237.5	256.9	8,627.4	9,714.7	10,738.5	11,578.2	12,916.7
	임금 변화액	21	0.0	23.4	35.0	50.4	66.5	0.0	863.0	1,004.0	2,052.1	3,493.8
		22	0.0	8.3	16.1	20.8	27.9	0.0	752.7	753.6	832.9	1,248.6
		12	0.0	13.4	31.3	40.7	50.5	0.0	32.0	283.5	1,036.9	1,731.0
		11	0.0	22.7	51.7	71.5	90.9	0.0	1,087.3	2,111.2	2,950.8	4,289.3
	임금 변화율	21	0.0	18.5	27.8	39.9	52.8	0.0	13.5	15.7	32.0	54.5
		22	0.0	8.2	16.0	20.6	27.7	0.0	13.6	13.6	15.1	22.6
		12	0.0	10.2	23.8	30.9	38.4	0.0	0.5	4.0	14.7	24.5
		11	0.0	13.7	31.1	43.1	54.7	0.0	12.6	24.5	34.2	49.7
종사상 지위 : KLIPS	임금 수준	21	79.9	103.6	115.3	133.5	147.0	4,264.0	5,156.9	5,141.4	6,204.3	7,967.2
		22	93.4	98.2	107.1	114.8	119.7	5,504.7	6,084.6	6,500.3	6,546.5	6,896.5
		12	88.4	88.0	113.5	124.5	135.9	3,852.5	4,545.2	5,594.5	5,825.8	6,393.9
		11	150.5	170.3	194.3	211.3	228.5	7,829.4	8,756.9	9,435.4	10,246.5	11,402.4
	임금 변화액	21	0.0	23.7	35.4	53.6	67.1	0.0	892.9	877.4	1,940.3	3,703.2
		22	0.0	4.9	13.8	21.4	26.3	0.0	579.9	995.6	1,041.8	1,391.9
		12	0.0	-0.4	25.1	36.1	47.5	0.0	692.7	1,742.0	1,973.2	2,541.4
		11	0.0	19.7	43.8	60.8	78.0	0.0	927.4	1,606.0	2,417.0	3,573.0
	임금 변화율	21	0.0	29.6	44.3	67.1	83.9	0.0	20.9	20.6	45.5	86.8
		22	0.0	5.2	14.7	22.9	28.2	0.0	10.5	18.1	18.9	25.3
		12	0.0	-0.5	28.4	40.8	53.8	0.0	18.0	45.2	51.2	66.0
		11	0.0	13.1	29.1	40.4	51.8	0.0	11.8	20.5	30.9	45.6

단, 임금변화액 및 임금변화율은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한편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비정규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22' 근로자 집단의 임금은 자기 선언의 경우 '21'과 '12' 근로자 집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이 특별히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통계청의 종사상 지위에 입각할 경우 이들의 임금은 '21'이나 '12'에 미치지 못하여 월평균 임금이 2002년에 20-30% 낮았으나 2006년이면 40-50%로 더욱 커진다. 다만 시간당 임금에서 격차도 동일 기간 동안 매우 커진다. KLIPS 기준을 사용할 경우 '22' 근로자의 2002년 임

금은 오히려 '21'이나 '12' 근로자 경우보다 더 높다. 그러나 2006년이면 이들 근로자 집단들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시간당 임금에서도 유사하다.

이제까지 살펴본 근로자 집단들은 어떤 형태로든 비정규 근로를 경험하는 집단들이다. 반면 정규 근로에 계속 종사하는 '11'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타 집단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월평균 임금 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들의 이러한 고용형태 간 움직임과 이에 따른 임금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는 힘으로 작용할까? 적어도 확립된 고용형태 기준을 사용할 경우 그러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다른 기준들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러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렵다.

V. 임금격차의 추정

이제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추정하여 보자.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를 옮겨 다님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는 지속적인 임금격차가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임금격차는 중요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제 근로시간 뿐 아니라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 즉 인적자본의 양, 인적특성, 사업체 특성 등의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임금격차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 먼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격차를 측정해보자. 이를 위한 임금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ln w_i = T_i\tau + X_i\beta + \eta_i.$$

좌변은 개별 근로자들의 로그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우변에 있는 X 는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의 벡터이다. 근로자 개인의 인적자본과 인적특성 및 가구배경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산업 및 직종 등의 변수들이 그러한 변수들이다.²⁾ 이처럼 근로자들의 임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모두 고려된 이후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차이를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임금격차로 파악할 수 있다. 우변에 있는 변수 T 는 비정규 근로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이에 대한 회귀계수 τ 는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의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표 7>은 식 (1)로 표현된 임금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2)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임금결정에 있어 인적자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의 크기는 크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2003-2006년에서 τ 의 추정치들이 음(-)의 값을 가져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 근로에 비해 0.60-5.96% 더 낮음을 보여주고 이는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significant)하다. 이는 동일한 시점에서 시간당 임금만으로 보았을 때의 임금격차인 13-23%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한편 2002년의 임금방정식 추정결과는 임금격차가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관측가능한 대부분의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 근로에 비해 오히려 0.94% 더 높게 나타나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인 남재량(2007a)에도 나타났던 현상으로서 그는 이를 보상임금격차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 7> 임금격차 추정결과 (고용형태) : 횡단면 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094	-0.0060	-0.0173	-0.0596	-0.0148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1126	-0.1065	-0.1608	-0.1237	-0.1094
	전문대졸	0.0704	0.0224	0.0608	0.1033	0.1042
	대졸이상	0.2330	0.2362	0.2711	0.2661	0.3012
노조유무(노조 없음 기준)		0.0769	0.1182	0.1283	0.1296	0.1794
수정R2		0.4324	0.5056	0.5460	0.5963	0.5596
관측수		3,625	3,893	3,987	3,855	4,090

단, 표에 제시된 모든 계수 추정치들은 1% 수준에서 유의함.

고용형태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이 시간에 걸쳐 뚜렷한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5년까지는 추정치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2006년 들어 2004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정도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과 노조유무를 나타내는 계수 추정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졸이하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치를 논외로 하면 전문대졸의 경우 2002년의 0.0704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6년이면 0.1042에 이른다. 대졸이상의 경우도 동일 기간 동안 0.2330에서 0.3012로 커진다. 노조유무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계수 추정치도 동일 기간 동안 0.0769에서 0.1794로 증가한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는 <부표 1>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정도와 노조유무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8>은 고용형태 구분 기준으로 자기선언과 종사상 지위를 사용하여 임금식을 추정할 경우 고용형태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하여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유의하게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 간의 임금격차가 10%를 넘지 못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인적특성과 인적자본 및 사업체 특성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매우 컷으나 이제 임금격차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9%를 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 아직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8> 임금격차 추정결과 (자기선언 및 종사상 지위) : 횡단면 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수 추정치 (정규 근로 기준)	자기선언	-0.0250	-0.0347	-0.0358	-0.0919	-0.0472	
	종사상 지위	통계청	-0.0588	-0.0426	-0.0771	-0.0998	-0.0681
		KLIPS	-0.0968	-0.0147	0.0024	-0.0559	-0.0029

이제 자료를 패널화하여 패널자료를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미관측 이질성까지 통제하여 보자. 이 경우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임금 방정식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첨자 i 는 근로자 개인을 나타내며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2) \ln w_{it} = T_{it}\tau + X_{it}\beta + \epsilon_{it} .$$

개별 근로자들의 관찰되지 못하는 이질적인 특성은 식 (2)에서 교란항 ϵ_{it} 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의 우변에 있는 α_i 가 바로 능력으로 대표되는 개인들의 미관측 이질성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epsilon_{it} = \alpha_i + u_{it} .$$

만약 추정에 있어 α_i 를 고려하지 못하면 패널자료에서 동일한 근로자의 상이한 시점에서 교란항들이 상관되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α_i 가 X_{it} 와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추정량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H_0 : E(\alpha_i | X_{it}) = 0$ 라는 가설이 기각된다면 우리는 패널모형을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Hausman 추정결과, 위의 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본고는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 9>에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고용형태에 대한 추정결과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추정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표 9>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용형태	0.0036	0.0077	0.635
연령	0.1455	0.0073	0.000
연령제곱	-0.0009	0.0001	0.000
근속	0.0103	0.0028	0.000
근속제곱	0.0005	0.0001	0.000
R2	0.1679		
관측수	19,488		

다만 여타의 기준을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경우 임금격차는 <표 10>에서 보듯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계수 추정치들이 모두 -0.05를 벗어나지 못해 임금격차의 크기는 패널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결국 인적특성과 인적자본의 양 및 사업체 특성에 더하여 개인들의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할 경우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이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격차 가운데에서도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격차를 다시 분해하여 생산성 차이에 의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차별의 최대치)으로 분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더 이상 분석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표 10> 고정효과 추정결과 (자기선언 및 종사상 지위)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계수 추정치 (정규 근로 기준)	자기선언	-0.0243	0.0105	0.0210	
	종사상 지위	통계청	-0.0377	0.0092	0.0000
		KLIPS	-0.0405	0.0133	0.0020

VI. 소결

본 연구는 이제까지 진행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밝히려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첫째, 비정규 근로에 대한 정의에 있어 상이할 뿐 아니라 둘째, 분석방법도 서로 다르며 셋째,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에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로 인해 어떤 연구에서는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연구에서는 임금격차가 거의 없거나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세 가지를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하여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만큼의 임금격차가 초래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밝히기 위해 먼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았으며 KLIPS가 그러한 자료임을 알았다. KLIPS는 확립된 고용형태 기준인 경

활 부가조사 항목들도 대부분 조사를 할 뿐 아니라 자기선언적 고용형태도 조사하며 종사상의 지위도 아울러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LIPS를 사용하여 상이한 비정규 근로 기준에 입각하여 단순한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임금격차를 횡단면으로 분석한 다음 자료를 패널화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분석방법에 있어 미관찰 이질성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찰 부가조사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들을 사용할 경우 기술통계로 본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만 통제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격차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경찰 부가조사 기준을 사용하여 고용형태 간 이동을 통한 임금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동을 경험하는 근로자 집단들 간의 임금이 매우 유사해지는 특성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이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근로자 개인들의 인적특성과 인적자본의 양 및 사업체 특성 등을 통제하고 임금격차를 추정할 결과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무관하게 임금격차는 10% 이내로 감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도 와 노조유무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횡단면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료를 패널화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경우 임금격차의 크기는 더욱 감소하였다.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데에 사용되는 이미 확립된 기준(경찰 부가조사)을 사용하여 추정할 경우 비정규 근로의 시간당 임금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고용형태 간 유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여타의 기준을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할 경우 고용형태 간 유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나 그 정도는 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비정규 근로라고 해서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뭉뚱그려 생각할 것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정규 근로와 비정규 근로를 옮겨 다니는 근로자들도 있으며 이들의 임금은 거의 유사하다. 반면 비정규직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근로자 집단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노동시장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비정규 근로 가운데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에 맞출 것을 암시한다. 계속 비정규 근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통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 등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부표 1> 임금식 추정결과(고용형태) : 횡단면 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094	-0.0060	-0.0173	-0.0596	-0.0148
연령		0.0635	0.0441	0.0475	0.0457	0.0460
연령제곱		-0.0008	-0.0005	-0.0006	-0.0006	-0.0006
근속기간		0.0321	0.0391	0.0356	0.0406	0.0366
근속기간제곱		-0.0003	-0.0006	-0.0004	-0.0006	-0.0004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1103	-0.0166	-0.0862	-0.1161	-0.0519
	남성 미혼	-0.1550	-0.1252	-0.1510	-0.1679	-0.1531
	여성 기혼 유배우	-0.3326	-0.3198	-0.3146	-0.3237	-0.3039
	여성 기혼 무배우	-0.4233	-0.3507	-0.3718	-0.3702	-0.3889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1126	-0.1065	-0.1608	-0.1237	-0.1094
	전문대졸	0.0704	0.0224	0.0608	0.1033	0.1042
	대졸이상	0.2330	0.2362	0.2711	0.2661	0.3012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4732	0.2100	0.3085	0.3613	0.3579
	전문직	0.1094	0.1727	0.1782	0.1286	0.1632
	준전문직	0.1553	0.1196	0.1314	0.1032	0.1075
	서비스직	-0.1366	-0.2409	-0.1770	-0.2102	-0.1758
	판매직	-0.0797	-0.1366	-0.0652	-0.1706	-0.1151
	농림어업숙련직	-0.2430	0.1169	0.0659	-0.1199	-0.1555
	기능직	-0.1473	-0.1548	-0.1006	-0.0788	-0.0616
	장치조작조립직	-0.2486	-0.2568	-0.2318	-0.1923	-0.1842
산업 (제조업 기준)	단순노무직	-0.2991	-0.3382	-0.2486	-0.2468	-0.3065
	군인	-0.1751	-0.0192	0.0270	0.0734	0.0643
	농림어업	0.2301	-0.1822	-0.2679	0.0543	-0.1360
	광업	0.1929	0.1519	0.1877	0.0072	0.1501
	전기가수수도업	0.2144	0.3107	0.2831	0.2891	0.2842
	건설업	0.1318	0.1280	0.2166	0.1396	0.1190
	도소매업	-0.0759	0.0007	0.0071	0.0393	-0.0366
	숙박음식업	-0.0695	0.0223	0.0509	0.0415	0.0107
	운수창고통신업	0.0059	-0.0584	-0.0206	-0.0240	-0.0837
	금융보험업	0.1731	0.2511	0.3104	0.3055	0.1708
	부동산 및 임대업	-0.0822	0.0129	-0.0039	0.0280	-0.1044
	사업서비스업	-0.0109	-0.0503	0.0094	0.0119	0.0106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035	0.1091	0.1262	0.0737	0.0201
교육서비스업	0.1132	0.0753	0.0783	0.0262	-0.02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19	-0.0033	0.0215	-0.0194	-0.0973	
오락·문화·운동·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1032	-0.0565	-0.0589	-0.0420	-0.1184	
사업체 규모	1	-0.2021	-0.1704	-0.1955	-0.2316	-0.1355
	2	-0.0624	-0.0508	-0.1290	-0.1364	-0.0795
	3	-0.0466	-0.0154	-0.0453	-0.0963	-0.0428
	4	-0.0277	0.0282	0.0142	-0.0327	-0.0268
	5	-0.0772	0.0009	0.0108	0.0132	0.0027
노동조합 (노조 없음 기준)		0.0769	0.1182	0.1283	0.1296	0.1794
상수항		7.5360	7.9051	7.8424	7.9211	7.9755
수정R ²		43.2	50.6	54.6	59.6	56.0
관측수		3,625	3,893	3,987	3,855	4,090

<부표 2> 임금식 추정결과(자기선언) : 횡단면 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형태(정규 근로 기준)		-0.0250	-0.0347	-0.0358	-0.0919	-0.0472
연령		0.0631	0.0439	0.0476	0.0453	0.0457
연령제곱		-0.0008	-0.0005	-0.0006	-0.0006	-0.0006
근속기간		0.0313	0.0383	0.0349	0.0389	0.0357
근속기간제곱		-0.0003	-0.0006	-0.0004	-0.0005	-0.0004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1043	-0.0158	-0.0845	-0.1150	-0.0498
	남성 미혼	-0.1547	-0.1249	-0.1499	-0.1685	-0.1544
	여성 기혼 유배우	-0.3288	-0.3160	-0.3114	-0.3197	-0.3004
	여성 기혼 무배우	-0.4212	-0.3467	-0.3668	-0.3599	-0.3831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1113	-0.1051	-0.1607	-0.1195	-0.1059
	전문대졸	0.0681	0.0208	0.0587	0.0945	0.0991
	대졸이상	0.2310	0.2351	0.2692	0.2577	0.2961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4703	0.2068	0.3057	0.3509	0.3504
	전문직	0.1093	0.1709	0.1759	0.1262	0.1619
	준전문직	0.1571	0.1191	0.1299	0.1005	0.1054
	서비스직	-0.1324	-0.2373	-0.1738	-0.2034	-0.1723
	판매직	-0.0760	-0.1351	-0.0677	-0.1651	-0.1106
	농림어업숙련직	-0.2390	0.1224	0.0739	-0.1282	-0.1519
	기능직	-0.1446	-0.1520	-0.0987	-0.0753	-0.0594
	장치조작조립직	-0.2477	-0.2566	-0.2329	-0.1905	-0.1859
산업 (제조업 기준)	단순노무직	-0.2921	-0.3327	-0.2439	-0.2380	-0.2986
	군인	-0.1766	-0.0211	0.0269	0.0650	0.0584
	농림어업	0.2342	-0.1799	-0.2607	0.0918	-0.1240
	광업	0.1913	0.1445	0.1855	-0.0003	0.1442
	전기가스수도업	0.2145	0.3130	0.2842	0.2983	0.2865
	건설업	0.1408	0.1380	0.2267	0.1612	0.1332
	도소매업	-0.0761	0.0008	0.0097	0.0391	-0.0341
	숙박음식업	-0.0677	0.0244	0.0551	0.0543	0.0173
	운수창고통신업	0.0069	-0.0590	-0.0233	-0.0255	-0.0828
	금융보험업	0.1756	0.2516	0.3105	0.3133	0.1756
	부동산 및 임대업	-0.0841	0.0121	-0.0056	0.0301	-0.1011
	사업서비스업	-0.0127	-0.0527	0.0078	0.0050	0.0085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042	0.1098	0.1249	0.0770	0.0222
교육서비스업	0.1160	0.0789	0.0802	0.0309	-0.023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27	-0.0049	0.0206	-0.0227	-0.0987	
오락·문화·운동·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1033	-0.0577	-0.0595	-0.0426	-0.1159	
사업체 규모	1	-0.2041	-0.1703	-0.1982	-0.2287	-0.1378
	2	-0.0668	-0.0521	-0.1310	-0.1379	-0.0829
	3	-0.0508	-0.0171	-0.0490	-0.1026	-0.0471
	4	-0.0317	0.0259	0.0108	-0.0345	-0.0311
	5	-0.0794	0.0014	0.0094	0.0083	0.0011
노동조합(노조 없음 기준)		0.0753	0.1173	0.1272	0.1302	0.1783
상수항		7.5422	7.9182	7.8619	8.0009	8.0069
수정R ²		43.3	50.6	54.6	59.8	56.0
관측수		3,625	3,893	3,987	3,855	4,090

<부표 3> 임금식 추정결과(종사상 지위 : 통계청) : 횡단면 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형태(정규 근로 기준)		-0.0588	-0.0426	-0.0771	-0.0998	-0.0681
연령		0.0635	0.0442	0.0478	0.0466	0.0463
연령제곱		-0.0008	-0.0005	-0.0006	-0.0006	-0.0006
근속기간		0.0297	0.0379	0.0342	0.0389	0.0352
근속기간제곱		-0.0003	-0.0006	-0.0004	-0.0005	-0.0004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 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1084	-0.0127	-0.0838	-0.1096	-0.0523
	남성 미혼	-0.1545	-0.1247	-0.1490	-0.1627	-0.1518
	여성 기혼 유배우	-0.3256	-0.3154	-0.3075	-0.3197	-0.3005
	여성 기혼 무배우	-0.4164	-0.3441	-0.3599	-0.3602	-0.3821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1113	-0.1049	-0.1583	-0.1189	-0.1061
	전문대졸	0.0629	0.0179	0.0508	0.0956	0.0957
	대졸이상	0.2268	0.2319	0.2620	0.2559	0.2939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4650	0.2090	0.3180	0.3594	0.3521
	전문직	0.1117	0.1751	0.1794	0.1304	0.1627
	준전문직	0.1669	0.1243	0.1442	0.1100	0.1091
	서비스직	-0.1271	-0.2344	-0.1623	-0.1960	-0.1658
	판매직	-0.0634	-0.1280	-0.0479	-0.1654	-0.1074
	농림어업숙련직	-0.2316	0.1288	0.0812	-0.1096	-0.1478
	기능직	-0.1394	-0.1506	-0.0899	-0.0724	-0.0557
	장치조작조립직	-0.2460	-0.2555	-0.2297	-0.1888	-0.1836
산업 (제조업 기준)	단순노무직	-0.2843	-0.3290	-0.2318	-0.2367	-0.2943
	군인	-0.1805	-0.0224	0.0322	0.0694	0.0574
	농림어업	0.2408	-0.1762	-0.2485	0.0861	-0.1166
	광업	0.1976	0.1353	0.1660	0.0026	0.1697
	전기가수도업	0.2156	0.3128	0.2904	0.2973	0.2877
	건설업	0.1478	0.1379	0.2372	0.1598	0.1393
	도소매업	-0.0727	0.0041	0.0148	0.0469	-0.0277
	숙박음식업	-0.0580	0.0273	0.0621	0.0586	0.0233
	운수창고통신업	0.0085	-0.0553	-0.0158	-0.0187	-0.0819
	금융보험업	0.1830	0.2585	0.3220	0.3130	0.1776
	부동산 및 임대업	-0.0820	0.0176	0.0087	0.0449	-0.0903
	사업서비스업	-0.0135	-0.0512	0.0073	0.0097	0.011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023	0.1072	0.1214	0.0743	0.0228
교육서비스업	0.1224	0.0805	0.0901	0.0422	-0.01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68	-0.0062	0.0138	-0.0262	-0.0966	
오락·문화·운동·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956	-0.0499	-0.0492	-0.0296	-0.1044	
사업체 규모	1	-0.1916	-0.1610	-0.1807	-0.2016	-0.1192
	2	-0.0600	-0.0470	-0.1227	-0.1173	-0.0693
	3	-0.0520	-0.0172	-0.0487	-0.0957	-0.0419
	4	-0.0398	0.0238	0.0057	-0.0382	-0.0318
	5	-0.0848	-0.0038	0.0038	0.0083	0.0003
노동조합(노조 없음 기준)		0.0675	0.1117	0.1163	0.1227	0.1719
상수항		7.5497	7.9214	7.8720	7.9713	7.9957
수정R ²		43.4	50.6	54.8	59.9	56.1
관측수		3,625	3,893	3,987	3,855	4,090

<부표 4> 임금식 추정결과(종사상 지위 : KLIPS) : 횡단면 자료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용형태(정규 근로 기준)		-0.0968	-0.0147	0.0024	-0.0559	-0.0029
연령		0.0621	0.0439	0.0478	0.0456	0.0461
연령제곱		-0.0008	-0.0005	-0.0006	-0.0006	-0.0006
근속기간		0.0298	0.0390	0.0360	0.0406	0.0368
근속기간제곱		-0.0003	-0.0006	-0.0004	-0.0005	-0.0004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 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1281	-0.0158	-0.0868	-0.1178	-0.0518
	남성 미혼	-0.1529	-0.1247	-0.1506	-0.1676	-0.1539
	여성 기혼 유배우	-0.3226	-0.3187	-0.3170	-0.3269	-0.3054
	여성 기혼 무배우	-0.4030	-0.3497	-0.3736	-0.3699	-0.3884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1088	-0.1061	-0.1601	-0.1191	-0.1088
	전문대졸	0.0632	0.0214	0.0623	0.1020	0.1048
	대졸이상	0.2284	0.2356	0.2724	0.2642	0.3016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4626	0.2084	0.3083	0.3587	0.3567
	전문직	0.1082	0.1718	0.1774	0.1292	0.1636
	준전문직	0.1564	0.1192	0.1296	0.1012	0.1071
	서비스직	-0.1244	-0.2409	-0.1788	-0.2087	-0.1762
	판매직	-0.0699	-0.1367	-0.0691	-0.1756	-0.1170
	농림어업숙련직	-0.2155	0.1221	0.0619	-0.1192	-0.1562
	기능직	-0.1364	-0.1538	-0.1031	-0.0768	-0.0624
	장치조작조립직	-0.2465	-0.2569	-0.2323	-0.1913	-0.1852
산업 (제조업 기준)	단순노무직	-0.2738	-0.3363	-0.2533	-0.2454	-0.3081
	군인	-0.1850	-0.0216	0.0294	0.0706	0.0663
	농림어업	0.2458	-0.1818	-0.2706	0.0789	-0.1371
	광업	0.1802	0.1480	0.1880	0.0083	0.1526
	전기가수수도업	0.2177	0.3121	0.2832	0.2941	0.2826
	건설업	0.1636	0.1323	0.2133	0.1487	0.1176
	도소매업	-0.0826	-0.0002	0.0064	0.0364	-0.0376
	숙박음식업	-0.0635	0.0240	0.0494	0.0498	0.0104
	운수창고통신업	0.0040	-0.0592	-0.0228	-0.0246	-0.0848
	금융보험업	0.1716	0.2496	0.3077	0.3045	0.1673
	부동산 및 임대업	-0.1041	0.0118	-0.0036	0.0256	-0.1059
	사업서비스업	-0.0206	-0.0517	0.0086	0.0049	0.009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070	0.1094	0.1257	0.0760	0.0196
교육서비스업	0.1184	0.0761	0.0768	0.0246	-0.027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72	-0.0036	0.0218	-0.0199	-0.0978	
오락·문화·운동·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992	-0.0559	-0.0604	-0.0440	-0.1190	
사업체 규모	1	-0.2053	-0.1704	-0.1946	-0.2278	-0.1347
	2	-0.0743	-0.0512	-0.1269	-0.1326	-0.0781
	3	-0.0622	-0.0161	-0.0442	-0.0971	-0.0423
	4	-0.0405	0.0271	0.0152	-0.0338	-0.0267
	5	-0.0858	-0.0003	0.0119	0.0116	0.0024
노동조합(노조 없음 기준)		0.0723	0.1181	0.1284	0.1290	0.1796
상수항		7.5719	7.9159	7.8506	7.9814	7.9865
수정R ²		43.5	50.6	54.6	59.6	56.0
관측수		3,625	3,893	3,987	3,855	4,090

<부표 5> 임의효과 추정결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086	0.0069	0.2130	
연령		0.0546	0.0032	0.0000	
연령제곱		-0.0007	0.0000	0.0000	
근속기간		0.0308	0.0020	0.0000	
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0.0480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0101	0.0276	0.7140	
	남성 미혼	-0.1402	0.0162	0.0000	
	여성 기혼 유배우	-0.3008	0.0142	0.0000	
	여성 기혼 무배우	-0.3031	0.0223	0.0000	
	여성 미혼	-0.2837	0.0199	0.0000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1515	0.0170	0.0000	
	전문대졸	0.0700	0.0160	0.0000	
	대졸이상	0.2566	0.0146	0.0000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2201	0.0388	0.0000	
	전문직	0.1276	0.0184	0.0000	
	준전문직	0.1065	0.0148	0.0000	
	서비스직	-0.2164	0.0216	0.0000	
	판매직	-0.1230	0.0207	0.0000	
	농림어업숙련직	-0.0098	0.0684	0.8870	
	기능직	-0.0787	0.0168	0.0000	
	장치조작조립직	-0.1671	0.0175	0.0000	
	단순노무직	-0.2357	0.0181	0.0000	
	군인	0.0845	0.1097	0.4410	
	산업 (제조업 기준)	농림어업	-0.0320	0.0631	0.6120
		광업	0.1759	0.1286	0.1710
		전기가스수도업	0.2444	0.0684	0.0000
건설업		0.1421	0.0173	0.0000	
도소매업		-0.0202	0.0171	0.2360	
숙박음식업		0.0343	0.0227	0.1310	
운수창고통신업		-0.0140	0.0207	0.4970	
금융보험업		0.2573	0.0244	0.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600	0.0382	0.1160	
사업서비스업		0.0043	0.0172	0.802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713	0.0264	0.0070	
교육서비스업		0.0892	0.0211	0.0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50	0.0270	0.8530	
오락 문화 운동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671	0.0202	0.0010	
사업체 규모	1	-0.1197	0.0103	0.0000	
	2	-0.0525	0.0103	0.0000	
	3	-0.0147	0.0092	0.1100	
	4	0.0103	0.0104	0.3190	
	5	0.0234	0.0147	0.1120	
노동조합 (노조 없음 기준)		0.0702	0.0094	0.0000	
차수	6차	0.0949	0.0076	0.0000	
	7차	0.1400	0.0078	0.0000	
	8차	0.2103	0.0081	0.0000	
	9차	0.2649	0.0083	0.0000	
상수항		7.5972	0.0681	0.0000	
관측수		19,488			
R ²		61.5			
Hausman 검정 통계량		465.91		0.0000	

<부표 6> 고정효과 추정결과 : 고용형태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032	0.0077	0.6740	
연령		0.0896	0.0234	0.0000	
연령제곱		-0.0009	0.0001	0.0000	
근속기간		0.0101	0.0028	0.0000	
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0.0000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0234	0.0347	0.5000	
	남성 미혼	-0.0434	0.0283	0.1260	
	여성 기혼 유배우	-0.1151	0.0554	0.0380	
	여성 기혼 무배우	-0.1349	0.0363	0.0000	
	여성 미혼	-0.1696	0.0660	0.0100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0299	0.0748	0.6890	
	전문대졸	0.0215	0.0349	0.5380	
	대졸이상	-0.0837	0.0379	0.0270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0292	0.0506	0.5650	
	전문직	0.0433	0.0277	0.1180	
	준전문직	0.0758	0.0206	0.0000	
	서비스직	-0.1609	0.0319	0.0000	
	판매직	-0.0908	0.0287	0.0020	
	농림어업숙련직	0.1247	0.0855	0.1450	
	기능직	-0.0077	0.0243	0.7520	
	장치조작조립직	-0.0790	0.0252	0.0020	
	단순노무직	-0.1369	0.0263	0.0000	
	군인	0.8736	0.3805	0.0220	
	산업 (제조업 기준)	농림어업	0.0099	0.0811	0.9030
		광업	0.3202	0.1910	0.0940
		전기가스수도업	0.0820	0.1317	0.5330
건설업		0.1235	0.0265	0.0000	
도소매업		0.0015	0.0242	0.9520	
숙박음식업		0.0567	0.0324	0.0800	
운수창고통신업		-0.0387	0.0325	0.2340	
금융보험업		0.2253	0.0417	0.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642	0.0546	0.2400	
사업서비스업		-0.0224	0.0252	0.374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43	0.0466	0.4610	
교육서비스업		0.0221	0.0358	0.53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728	0.0522	0.1630	
오락 문화 운동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448	0.0291	0.1250	
사업체 규모	1	-0.0742	0.0119	0.0000	
	2	-0.0232	0.0115	0.0440	
	3	0.0035	0.0101	0.7320	
	4	0.0158	0.0113	0.1610	
	5	0.0333	0.0160	0.0370	
노동조합 (노조 없음 기준)		0.0304	0.0108	0.0050	
차수	6차	0.0760	0.0227	0.0010	
	7차	0.1099	0.0434	0.0110	
	8차	0.1739	0.0644	0.0070	
	9차	0.2198	0.0855	0.0100	
상수항		6.5814	0.8067	0.0000	
관측수				19,488	
R ²				14.7	

<부표 7> 고정효과 추정결과 : 자기선언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243	0.0105	0.0210	
연령		0.0882	0.0234	0.0000	
연령제곱		-0.0009	0.0001	0.0000	
근속기간		0.0099	0.0028	0.0000	
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0.0000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0244	0.0347	0.4820	
	남성 미혼	-0.0436	0.0283	0.1230	
	여성 기혼 유배우	-0.1145	0.0553	0.0390	
	여성 기혼 무배우	-0.1339	0.0363	0.0000	
	여성 미혼	-0.1707	0.0660	0.0100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0318	0.0748	0.6710	
	전문대졸	0.0191	0.0349	0.5840	
	대졸이상	-0.0874	0.0379	0.0210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0271	0.0506	0.5920	
	전문직	0.0431	0.0277	0.1200	
	준전문직	0.0757	0.0206	0.0000	
	서비스직	-0.1580	0.0319	0.0000	
	판매직	-0.0889	0.0287	0.0020	
	농림어업숙련직	0.1294	0.0855	0.1300	
	기능직	-0.0056	0.0243	0.8180	
	장치조작조립직	-0.0786	0.0252	0.0020	
	단순노무직	-0.1323	0.0264	0.0000	
	군인	0.8750	0.3804	0.0210	
	산업 (제조업 기준)	농림어업	0.0120	0.0810	0.8830
		광업	0.3168	0.1910	0.0970
		전기가스수도업	0.0849	0.1317	0.5190
건설업		0.1297	0.0266	0.0000	
도소매업		0.0008	0.0242	0.9920	
숙박음식업		0.0587	0.0324	0.0700	
운수창고통신업		-0.0372	0.0325	0.2520	
금융보험업		0.2250	0.0417	0.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638	0.0546	0.2420	
사업서비스업		-0.0236	0.0252	0.349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66	0.0466	0.4310	
교육서비스업		0.0226	0.0358	0.52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734	0.0522	0.1600	
오락 문화 운동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446	0.0291	0.1260	
사업체 규모	1	-0.0744	0.0119	0.0000	
	2	-0.0237	0.0115	0.0400	
	3	0.0028	0.0101	0.7810	
	4	0.0157	0.0113	0.1660	
	5	0.0332	0.0160	0.0380	
노동조합 (노조 없음 기준)		0.0303	0.0108	0.0050	
차수	6차	0.0768	0.0227	0.0010	
	7차	0.1121	0.0434	0.0100	
	8차	0.1773	0.0644	0.0060	
	9차	0.2239	0.0855	0.0090	
상수항		6.6175	0.8067	0.0000	
관측수			19,488		
R ²			15.0		
Hausman 검정통계량		463.44		0.0000	

<부표 8> 고정효과 추정결과 : 종사상 지위(통계청)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377	0.0092	0.0000
연령		0.0877	0.0234	0.0000
연령제곱		-0.0009	0.0001	0.0000
근속기간		0.0097	0.0028	0.0000
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0.0000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0247	0.0347	0.4770
	남성 미혼	-0.0451	0.0283	0.1110
	여성 기혼 유배우	-0.1144	0.0553	0.0390
	여성 기혼 무배우	-0.1360	0.0363	0.0000
	여성 미혼	-0.1703	0.0660	0.0100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0379	0.0748	0.6120
	전문대졸	0.0180	0.0348	0.6050
	대졸이상	-0.0897	0.0379	0.0180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0274	0.0506	0.5880
	전문직	0.0429	0.0277	0.1210
	준전문직	0.0767	0.0206	0.0000
	서비스직	-0.1571	0.0319	0.0000
	판매직	-0.0867	0.0287	0.0030
	농림어업숙련직	0.1307	0.0854	0.1260
	기능직	-0.0047	0.0242	0.8450
	장치조작조립직	-0.0780	0.0252	0.0020
	단순노무직	-0.1313	0.0263	0.0000
	군인	0.8448	0.3803	0.0260
산업 (제조업 기준)	농림어업	0.0154	0.0810	0.8490
	광업	0.3174	0.1909	0.0960
	전기가스수도업	0.0960	0.1316	0.4660
	건설업	0.1321	0.0265	0.0000
	도소매업	0.0041	0.0242	0.8660
	숙박음식업	0.0618	0.0324	0.0560
	운수창고통신업	-0.0361	0.0325	0.2660
	금융보험업	0.2300	0.0417	0.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601	0.0545	0.2710
	사업서비스업	-0.0216	0.0251	0.391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45	0.0465	0.4580
	교육서비스업	0.0264	0.0358	0.46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759	0.0522	0.1460
오락 문화 운동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389	0.0292	0.1820	
사업체 규모	1	-0.0692	0.0120	0.0000
	2	-0.0212	0.0115	0.0650
	3	0.0030	0.0101	0.7670
	4	0.0139	0.0113	0.2170
	5	0.0327	0.0160	0.0410
노동조합 (노조 없음 기준)		0.0288	0.0108	0.0080
차수	6차	0.0767	0.0227	0.0010
	7차	0.1114	0.0434	0.0100
	8차	0.1753	0.0644	0.0070
	9차	0.2216	0.0855	0.0100
상수항		6.6417	0.8063	0.0000
관측수		19,488		
R ²		15.4		
Hausman 검정통계량		453.69		0.0000

<부표 9> 고정효과 추정결과 : 종사상 지위(KLIPS)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고용형태 (정규 근로 기준)		-0.0405	0.0133	0.0020	
연령		0.0882	0.0234	0.0000	
연령제곱		-0.0009	0.0001	0.0000	
근속기간		0.0095	0.0028	0.0010	
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0.0000	
성과 혼인상태 (남성기혼유배우 기준)	남성 기혼 무배우	0.0238	0.0347	0.4920	
	남성 미혼	-0.0445	0.0283	0.1150	
	여성 기혼 유배우	-0.1168	0.0553	0.0350	
	여성 기혼 무배우	-0.1367	0.0363	0.0000	
	여성 미혼	-0.1737	0.0660	0.0090	
교육정도 (고졸 기준)	중졸이하	0.0352	0.0748	0.6380	
	전문대졸	0.0174	0.0349	0.6170	
	대졸이상	-0.0907	0.0380	0.0170	
직종 (사무직 기준)	고위임직원	0.0273	0.0506	0.5890	
	전문직	0.0426	0.0277	0.1240	
	준전문직	0.0749	0.0206	0.0000	
	서비스직	-0.1551	0.0319	0.0000	
	판매직	-0.0885	0.0287	0.0020	
	농림어업숙련직	0.1360	0.0855	0.1120	
	기능직	-0.0035	0.0243	0.8850	
	장치조작조립직	-0.0781	0.0252	0.0020	
	단순노무직	-0.1291	0.0264	0.0000	
	군인	0.8720	0.3803	0.0220	
	농림어업	0.0137	0.0810	0.8660	
	광업	0.3131	0.1909	0.1010	
	전기가스수도업	0.0939	0.1317	0.4760	
산업 (제조업 기준)	건설업	0.1346	0.0267	0.0000	
	도소매업	-0.0018	0.0242	0.9420	
	숙박음식업	0.0569	0.0324	0.0790	
	운수창고통신업	-0.0407	0.0325	0.2110	
	금융보험업	0.2213	0.0417	0.0000	
	부동산 및 임대업	-0.0654	0.0546	0.2310	
	사업서비스업	-0.0252	0.0252	0.316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66	0.0466	0.4310	
	교육서비스업	0.0239	0.0358	0.505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725	0.0522	0.1650	
	오락 문화 운동 기타 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0.0444	0.0291	0.1270	
	사업체 규모	1	-0.0746	0.0119	0.0000
		2	-0.0245	0.0115	0.0330
3		0.0017	0.0102	0.8710	
4		0.0143	0.0113	0.2070	
5		0.0328	0.0160	0.0400	
노동조합 (노조 없음 기준)		0.0301	0.0108	0.0050	
차수	6차	0.0767	0.0227	0.0010	
	7차	0.1115	0.0434	0.0100	
	8차	0.1762	0.0644	0.0060	
	9차	0.2226	0.0855	0.0090	
상수항		6.6249	0.8066	0.0000	
관측수			19,488		
R ²			14.9		
Hausman 검정통계량		465.28		0.0000	

참고문헌

- 권혜자, “고용형태간 노동이동과 임금효과,” 고용과 직업, 제1권 창간호, 2007.
- 남재량, 「우리나라의 실업률 추세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 _____,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6.
- _____,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 노동경제논집 제30권 2호, 2007a.
- _____, "Study on Labor Market Dynamics: Focusing on KLIPS,"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anel Data Analyses: Employment and Quality of Life, 2007b.
- 남재량·이인재·이기재,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서울: 노동부, 2005.
-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노동경제논집』 24권 1호 (2001. 3): 67-96.
- 안주엽, "Nonstandard Employment Arrangements in Korea: What Have We Learned?,"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4.
- 어수봉·윤석천·김주일.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서울: 노동부, 2005.
- 이인재, “정규직 임금프리미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006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정진호(2003), “제12장 임금,”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 Hausman, Jerry A., and Taylor, William E. "Panel Data and 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s." *Econometrica* 49 (6) (November, 1981): 1377-1398.